

2022년 대가야교육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이 조건은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운송업체” 라 한다)가 행하는 대가야교육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가야교육원 수강생 등·하원 수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대가야교육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이라 함은 운송업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로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대가야교육원 수강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송대상) 운송업체는 대가야교육원 수강생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으로부터 용역기간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상 또는 교육원 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운행일수·구간·시간 등) ① 운행일자는 2022년 대가야교육원 학사일정에 따른 수업일인 월요일~수요일이며, 용역기간 중 공휴일, 기타 교육원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약 140일 운행예정으로 한다.

② 학생 수송 구간 및 운행시간은 대가야교육원 수강생 선발 후 「대가야교육원 통학버스 운행 노선도」에 의하며 1일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1회 운영은 등원 운행과 하원 운영을 모두 하는 것을 1회로 간주한다.

③ 발주기관에서는 수강생 편의와 대가야교육원의 원활한 학사 운영을

고려한 노선도를 구성하여 운송업체에 운행 요청한다. 단 수강생 전출입·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구간·횟수·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다.

④ 운송업체는 합의한 노선별 운행시간 및 구간을 엄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출발시간 10분 전 최초 승차장소에 차량을 대기하여 통학버스 이용 수강생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노선 운행에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운송업체는 이를 이유로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6조(통학버스의 요건) ①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등록된 차량으로 22인승 2대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는 냉·난방시설이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운송업체는 통학버스 및 운전자를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공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5일 전에 신청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송업체는 용역체결 후 대가야교육원 통학버스 운행 및 요건을 갖추어 운행일부터 전세차량을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근로자의 고용계약) 운송업체는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운송업체는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3.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4.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5.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9조(게시사항) 운송업체는 운행차량 내에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대가야교육원 학생수송차량”이라는 표지판 및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운송업체 소속원으로 운송업체는 운전자의 건강, 신원, 위생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운전자는 통학버스 운행시간 30분 전 또는 사전에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통학버스 이용 수강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정해진 운행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 통학버스 이용 수강생의 승·하차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며, 통학버스 이용 수강생이 승·하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통학버스 운행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통학버스 운행 시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대가야교육원 측에 인계하며, 운행 시 발생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송업체에 있다.

⑦ 운전자는 운행차량을 늘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법정감염병 등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해진 운행시간 및 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통학 수강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운행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1.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지정된 운행차량 외의 다른 차량으로 운행하는 행위
 13. 정당한 이유 없이 통학버스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14. 대가야교육원 수강생, 학부모, 직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또는 원성을 받는 민원행위와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범죄행위
 15.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거나 대가야교육원 수강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 ⑨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날은 익일까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대가야교육원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운송업체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 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최소 3일전)에 발주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로 대체하여 통학수강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제6조 또는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법규 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운송업체에 시정·개선 요청 후 차량 또는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운송업체는 발주기관의 요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서면으로 연속 2회 이상 요구 시에도 불응할 경우 발주기관은 운송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운송업체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발주기관은 운전자 및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운송업체는 운행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관계 당국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제출) ① 운송업체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② 운송업체는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 경력조회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은 월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하여 차량운행 중단 기간이 30일 이상 지속 시 미운행 기간에 대한 대가는 협의하여 사후 감액할 수 있다.

1. 감염병 발생·확산 및 그 예방을 위하여 대가야교육원 등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자연재난, 천재지변 등에 따른 수업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3. 대가야교육원 학사 운영 계획 변경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차량운행이 불필요한 경우
- ③ 운송업체는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 ④ 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송업체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보험 등의 가입) ① 운송업체가 운행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업체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주기관에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운송업체는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운송업체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송업체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④ 운송업체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교육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① 발주기관은 운송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2년 내 입찰에 응할 수 없다.

③ 이 계약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운송업체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운송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운송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운송업체는 서면 통보를 받을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가. 임차용역계약서

나. 대가야교육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운송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운송업체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기밀누설 금지) 운송업체 및 운송업체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발주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운송업체는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